# 주요심결사례

2002. 9. 9. 심결

| 사 건 명 | 위 반 내 용 | 시 정 조 치 |
|---|---|---|
| (주)수신오가피의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에 대한 건 (2002광고0729) | (주)수신오가피는 2002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 기간 중 조선일보 등에 "오가피를 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", "오가피를 아시는 모든 분께 또 다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"등의 제하에 "아칸토싸이드D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입니다"라고 광고, "아칸토싸이드D"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이라고 허위 · 과장광고 하는 행위를 하였고, "국립대학교 2곳, 제약회사 1곳,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시험한 내용입니다"라는 설명과 함께 자사제품 2개와 타사 8개 제품의 "아칸토싸이드D성분 함량비교표"를 제시하면서 『"아칸토싸이드D성분"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가짜이며,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』고 광고,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가 아닌 "아칸토싸이드D성분 함량비교"를 객관적 비교분석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"아칸토싸이드D성분"의 함량을 부당하게 비교 광고하고, 동 성분이 적게 들어있거나 없는 제품은 가짜라고 경쟁사를 비방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위반 | ▶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×37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<br>▶ 과징금 납부 : 1,800만원 |